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8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0.

발 의 자 : 황 희·한민수·조계원

김태년·박수현·민홍철

정성호·이언주·김준형

최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
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, 공·사립학교는 시·도의 교육
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높아지며
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, 이로 인한 사고 책임 및
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의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임.

이에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
지원,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, 장애인의 학교시설 우선 이용 및
사고 관련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
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1조).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“이용”을 “이용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등의 개방 시 장애인이 학교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학교의 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학교시설 등을 관리하였을 때에는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등의 유지·보수 등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을 위하여 학교시설 등의 이용 및 예약 등에 관한 학교시설정보시

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학교시설 등의 <u>이용</u>) (생략)	제11조(학교시설 등의 <u>이용 등</u>)
<u><신 설></u>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등의 개방 시 장애인이 학교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④ 학교의 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학교시설 등을 관리하였을 때에는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<u><신 설></u>	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등의 유지·보수 등 학

<u><신 설></u>	<u>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u>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을 위하여 학교시설 등의 이용 및 예약 등에 관한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